공 개

의안번호	제 109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3. 4. (제 4 차)

의결사항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 출 연월일	2026. 3. 4.

1. 의결주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금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금융위원장 위임사항

□ 신용정보업감독 관련 사항(안 별표 제3호)

○ 데이터전문기관의 자진 지정 취소 신청 등에 따른 지정 취소

□ 제재 관련 절차사항(안 별표 제46호)

○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

□ 금융혁신지원 관련사항(안 별표 제53호)

○ 금융관련법령 정비 완료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통보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안 별표 제55호)

○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기간 연장

□ 가상자산 관련 사항(안 별표 제57호)

○ 불공정거래 조사·조치·제재 관련 행정 절차 및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비규제)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2) 행정예고기간('26.2.12.~'26.2.24.)

마. 제4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2.26.) 심의필

<별 지>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제4항제2호

별표 제4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재 관련사항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 제3항

별표 제53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금융관련법령 정비 완료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통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의2제2항, 제8항, 「혁심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4제3항

별표 제55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기간 연장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59조

별표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가상자산시장 이상거래 통보 및 보고의 접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에 관한 사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 해임권고·면직요구 관련 청문 실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라.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바.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 보고의 수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
3. 신용정보업감독 관련 사항	3. 신용정보업감독 관련사항
	자.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제4항제2호
<신 설>	
46. 제재 관련 절차사항	46. 제재 관련 절차사항
나. 제재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및 검토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나. 제재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및 검토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항
53. 금융혁신지원 관련 사항	53. 금융혁신지원 관련 사항
	머. 금융관련법령 정비 완료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통보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의2제2항, 제8항, 「혁심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4제3항
<신 설>	
55.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55.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더.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기간 연장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59조
<신 설>	
57. 가상자산 관련 사항	57. 가상자산 관련 사항
	가. 가상자산시장 이상거래 통보 및 보고의 접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신 설>	

	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에 관한 사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 해임권고·면직요구 관련 청문 실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라.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바.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위탁 사무의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붙임 **관계 법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위원장에 대한 위임)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중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데이터전문기관)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해산·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4(규제 개선의 요청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을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요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59조(이의신청)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②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해임권고 또는 면직요구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④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금의 환급,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과징금의 부과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기록을 생성·보존 또는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보고한 자
8.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검사·조사·명령·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탁)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보고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의사운영정보팀
연 락 처	02-2100-2898